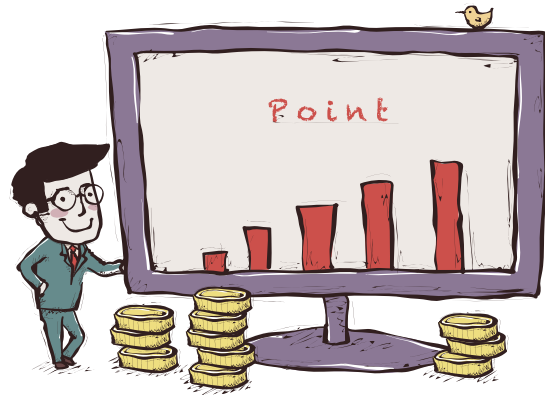


2012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편집자주]



■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모든산업	4,580원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요율
건설업	$\frac{37}{1,000}$

■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 보수

구분	월평균 보수
건설업	2,597,274원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부담금	비고
1명당	59만원/월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 실적액은 62억4천6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해서는 월 88만5천원 ※ 다만,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해서는 95만7천원

■ 건설공사 노무비율

구분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frac{28}{100}$
하도급 건설공사	$\frac{32}{100}$